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가합573825 판결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 2018. 9. 20.

판결 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60,000주를 대금 합계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주식양도양수의 전제조건)

갑('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현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재개발사업"의 주체인 (주)F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나 2012. 1. 31.까지는 그 보증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갑과 (주)F의 회계가 분리되는 시점에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의 주주가 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3조(을의 의무)

- ① 을은 2011. 8. 24. 갑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2억 원은 을이 갑 회사의 주주가 될 경우 납입하여야 할 주식대금(1주의 금액: 5,000원으로 보통주식 40,000주의 주금에 해당함)의 선납금의 성격을 가진다.
- ③ 을은 제2조의 전제조건이 성취되면 나머지 주식대금 1억 원(보통주식 20,000주의 주금에 해당함)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갑의 의무)

- ① 갑은 2012. 1. 31.까지 (주)F와 회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을이 갑의 주주가 되는데에 장애사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주식양도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어 을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갑의 연대보증인 C와 을이 별지 주주명부상의 주식보유비율을 50대50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도인을 지정하거나 기타의 제반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원(총 6억 원)이고, 주주명부상 피고

C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인 6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측에 주식매매대금으로 2011. 8. 25. 2억 원, 2012. 3. 19.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2. 7. 31.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7. 8. 31.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최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 합계 60,000주(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 3항 참조)를 양도하여 피고 C와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비율을 50:50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도인을 지정하거나 기타의 제반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주식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금을 받은 날인 2011. 8. 2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8.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당초 3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이 원고가 2012. 3. 19. 피고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은 2012. 7. 31. 피고 회사가 상환하였다고 항변하자, 원고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취지를 2억 원으로 감축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주발행이 없었던 이상 위 2억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도 하였으나, 2018. 5. 2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 항변을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동진

판사민경현

판사윤정운